

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 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7. 6. 11 (월) 김영해의원외 2
- 나. 회부일자 : 2007. 6. 20(수)
- 다. 상정일자 : 2007. 6. 21(목) 제139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7. 6. 21) 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김영해 의원)

가. 제안 이유

- 「주택법」(법률 제8239호 일부개정 2007.1.11)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내의 공공시설물 관리업무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 골자

-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(안 제5조)
- 지원신청 방법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지원결정 및 변경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7조 내지 제8조)
-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9조)
-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설치,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.
(안 제10조 내지 제11조)
- 위원장과 의원의 직무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12조 내지 제13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상진)

가. 본 제정 조례안은 「주택법」(법률 제8239호 일부개정 2007.1.11)

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
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내의 공공
시설물 관리업무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
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4조에서는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
-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을
-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을
-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지원결정 및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
- 안 제9조에서는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
- 안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설치, 구성
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- 안 제12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위원장과 의원의 직무 임기 등에
대하여 규정하고 있음

다. 검토결과

-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: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1부 끝.

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7년 6월 11일
제출자 : 김영해 의원외 2인

1. 제안이유

「주택법」(법률 제8239호 일부개정 2007.1.11)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내의 공공시설물 관리업무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나.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다. 지원신청 방법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라. 지원결정 및 변경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7조 내지 제8조)
- 마.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9조)
- 바.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설치,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.
(안 제10조 내지 제11조)
- 사. 위원장과 위원의 직무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12조 내지 제1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관계부서 협의
- 다. 관계부처승인 : 관계부서 협의

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택법」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공동주택”이라 함은 「주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고 한다.) 제2조제2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.
2. “관리주체”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.
 - 가.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
 - 나.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
 - 다. 가목 내지 나목외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

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구역내에 법 또는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하여 건립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에 한한다.

제5조(지원대상)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.

1. 단지내 도로, 보도 및 보안등 보수
2.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
3.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
4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외 공동시설

②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.

제6조(지원 신청 등) ①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『별지 제1호 서식』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
2.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
3.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
4.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
5.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
6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원결정 및 통보)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부서별로 지원대상사업의 필요성,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평창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·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.
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한다.

제8조(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 취소 등)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, 지원금의 교부결정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용지원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
2.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
3.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
4.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
5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

제9조(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)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0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군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평창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둔다.

1.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
2.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1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군의회 의원 1인, 부군수, 기획감사실장, 민원봉사과장, 건설과장, 지역도시과장, 재난안전관리과장,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건축·토목·조경·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,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④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-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.

제13조(위원의 제척) 제10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- 1.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는 경우
- 2.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

제14조(회의 및 수당 등)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

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 - 2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-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·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인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보고 등) ①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, 사업비정산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.

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,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제16조(준용) 예산지원 및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」 및 「평창군 재무회계규칙」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동주택 지원 신청서

(제6조제1항 관련)

공동 주택명			
주 소			
규모(세대수)		사용승인일	
대 표 자		연 락 처	
신 청 내 용			
구 분	개 요	소요예산	비 고

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○○○공동주택입주자 대표) : (인)

평창군수 귀하

- 구비서류
1. 입주자 대표회의록(사본) 1부
 2. 사업계획서 1부

관계법령 발췌

지방자치법

제58조(의안의 발의)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② ~ ③ 생략

제123조(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등)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행정절차법

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① 법령등을 제정·개정 또는 폐지(이하“입법”이라 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~ 2. 생략
3.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
4. ~ 5. 생략

평창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

제14조(예고의 예외) 입법예고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~ 2. 생략
3.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인 경우
4. ~ 5. 생략

주택법

제43조(관리주체 등)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(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,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.

②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여야 한다.

③~⑥ 생략

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·요구의 방법 및 절차,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·운영 및 의결사항, 관리주체의 업무, 관리방법의 변경 및 공동주택관리기구(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)의 구성·기능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9조 (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,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,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·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·장부·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생략